



# DK 번역 행정사 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4, 현죽빌딩 828호

## GENIUS 법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에 관한 법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r the “GENIUS Act”.

- 문의 : <https://www.dkyew.net>
- 이메일 : [yewdongkyu@gmail.com](mailto:yewdongkyu@gmail.com)
- 영문본 출처 : 미국 의회 (<https://www.congress.gov>)

본 문서는 DK 번역 행정사 사무실에서 번역한 비공식 번역본이며 퍼블릭 도메인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번역본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번역본의 무단 복제, 배포, 수정,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법적 해석이나 공식 효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This document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provided by DK Certified Translation Office and based on public domain content provided by the U.S. Senate. This translatio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has no legal effect. Unauthorized reproduction, distribution, modification, or commercial use of this translation is prohibited. For legal interpretation or official use, please refer to the original document or consult with a legal professional.

제 119 대 연방의회  
제 1 회기

## S. 1582

### 법안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및 그 밖의 목적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미합중국 상원 및 하원의 의결에 따라 제정한다.

#### 제 1 조. 약칭

본 법은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에 관한 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또는 “GENIUS Act”로 칭한다.

#### 제 2 조. 정의.

본 법에서:

- (1) 적격 연방 은행 감독기관 – “적격 연방 은행 감독기관”이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제 3 조(12 U.S.C. 1813)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 (2) 은행비밀법.–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제 21 조(12 U.S.C. 1829b);
  - (B) 공법 제 91-508 호(Public Law 91-508) 제 1 편 제 2 장(12 U.S.C. 1951 이하);
  - (C) 미합중국 법전(United States Code) 제 31 편 제 53 장 제 2 절.
- (3) 이사회.– “이사회(Board)”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를 의미한다.

- (4) 통화감독관.- “통화감독관(Comptroller)”이란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을 의미한다.
- (5) 공사 - “공사(Corporation)”란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를 의미한다
- (6) 디지털 자산 -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이란 암호화로 보호되는 분산원장에 기록된 가치의 디지털 표현을 의미한다.
- (7)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란-
- (A) 다음 사업에 종사하며 보수를 받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미국 내(미국 내 고객이나 사용자를 대리하는 행위 포함)에서 활동하는 자를 의미한다 -
- (i) 디지털 자산을 금전적 가치로 교환하는 행위;
  - (ii) 디지털 자산을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교환하는 행위;
  - (iii) 디지털 자산을 제 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 (iv) 디지털 자산 수탁자로서의 역할 수행; 또는
  - (v) 디지털 자산 발행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에 참여하는 행위; 그리고
- (B) 다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
- (i) 분산원장 프로토콜;
  - (ii) 분산원장 프로토콜 또는 자가수탁형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개발, 운영, 또는 관련 사업 종사;
  - (iii) 변경 불가능한 자가수탁형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 (iv) 거래 검증 또는 분산원장 운영의 개발, 운영, 또는 관련 사업 종사;
  - (v) P2P(피어 투 피어) 거래를 위한 유동성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성 풀 또는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 참여.

- (8) 분산원장 -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이란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검증된 거래 또는 정보를 공개 디지털 원장에 기록하며,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데이터를 연결하여 공개 원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기타 기능을 실행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 (9) 분산원장 프로토콜 - “분산원장 프로토콜(distributed ledger protocol)”이란 스마트 계약 또는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분산원장에 배포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실행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 (10) 연방 지점 - “연방 지점(Federal branch)”이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제 3 조(12 U.S.C. 1813)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 (11) 연방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연방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Federal qualified payment stablecoin issuer)”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제 5 조에 따라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비은행 기관(주(State)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제외);
  - (B) 보험 미가입 국립은행 -
    - (i) 개정 법령 LXII 편에 따라 통화감독관이 인가한 은행; 그리고
    - (ii) 제 5 조에 따라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은행; 및
  - (C) 연방 지점 - 제 5 조에 따라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연방 지점.
- (12)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foreign payment stablecoin issuer)”란 다음에 해당하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의미한다:
- (A) 외국, 미국 영토, 푸에르토리코, 괌, 아메리칸사모아 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조직되었거나 그곳에 본점을 둔 자; 및
  - (B)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아닌 자.

- (13) 기관 관련자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관하여, “기관 관련자(institution-affiliated party)”란 해당 발행자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지배 주주를 의미한다.
- (14) 보험 가입 신용조합 - “보험 가입 신용조합(insured credit union)”이란 연방신용조합법(Federal Credit Union Act) 제 101 조(12 U.S.C. 1752)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 (15) 예금보호 금융기관<sup>[5]</sup>. - “예금보호 금융기관”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제 3 조(12 U.S.C. 1813)에서 정의된 보험 가입 예금기관; 및
- (B) 보험 가입 신용조합.
- (16) 적법 명령 - “적법 명령(lawful order)”이란 연방법에 따라 발령 또는 공포된, 관할권 있는 법원이나 법정 권한이 있는 연방 기관이 그 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발행한 최종적이고 유효한 영장, 절차, 명령, 규칙, 판결, 명령 또는 기타 요구로서, 다음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 (A) 해당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압류, 동결, 소각 또는 이전 방지를 요구하는 것;
- (B) 차단 대상인 결제 스테이블코인 또는 계좌를 합리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것; 및
- (C)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검토나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
- (17) 금전적 가치 - “금전적 가치(monetary value)”란 국가 통화 또는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제 3 조(12 U.S.C. 1813)에서 정의된 예금으로서, 국가 통화 단위로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 (18) 자금.-“자금”이라는 용어는-
- (A) 현재 국내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해 승인되거나 채택된 교환 수단을 의미하며;
- (B) 2 개국 이상 간의 합의나 정부간 기구에 의해 설정된 회계 단위(monetary unit of account)를 포함한다.

- (19) 국가 통화 - “국가 통화(national currency)”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 (A)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제 16 조(12 U.S.C. 411)의 첫 번째 무표기 단락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연방준비권(Federal Reserve note);
  - (B)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계좌에 입금된 자금;
  - (C) 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 (D) 두 개국 이상 간의 협약에 따라 정부간 기구가 발행한 화폐.
- (20) 비은행 기관 - “비은행 기관(nonbank entity)”이란 예금기관 또는 예금기관의 자회사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
- (21) 제안 - “제안(offer)”이란 구매,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22) 결제 스테이블코인 - “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이란-
- (A) 다음의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 (i) 결제 또는 정산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 그리고
    - (ii) 그 발행자는-
      - (I) 고정된 금전적 가액(디지털 자산으로 표시된 고정 금액은 제외)으로의 전환, 상환 또는 재매입 의무를 지며;
      - (II) 그러한 발행자가 고정 금전적 가치에 대한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거나 이를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생성함을 표방한다; 그리고
  - (B) 다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은 제외한다:
    - (i) 국가 통화
    - (ii)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제 3 조(12 U.S.C. 1813)에서 정의된 예금(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해 기록된 예금 포함); 또는

(iii)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제 2조(15 U.S.C. 77b),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제 3조(15 U.S.C. 78c), 또는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제 2조(15 U.S.C. 80a-2)에서 정의된 증권. 단, 본 법 제 17조에 따라 명확히 하기 위해,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채권, 어음, 채무증권 또는 투자계약은 (A)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3)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란 미국 내에서 설립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 (A) 제 5조에 따라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을 받은 보험 가입 예금기관의 자회사;
- (B) 연방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또는
- (C) 주(State)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24) 법인.-“법인”이란 개인, 파트너십, 회사, 공사, 협회, 신탁, 재산, 협동 조직 또는 기타 법인 또는 비법인 사업체를 의미한다.

(25)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 -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primary Federal payment stablecoin regulator)”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보험 가입 예금기관(보험 가입 신용조합 제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 가입 예금기관의 적격 연방 은행 감독기관;
- (B) 보험 가입 신용조합 또는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국가 신용조합 관리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 (C) (A)항에 명시되지 않은 주 인가 예금기관에 대해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관(Comptroller), 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 (D) 연방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서는 통화감독관(Comptroller).

- (26) 등록 공인회계법인 - “등록 공인회계법인(registered public accounting firm)”이란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 제 2조(15 U.S.C. 7201)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 (27)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 -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란 본 법에서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명칭의 위원회를 의미하며,
- (A) 구성은 다음과 같다:
- (i) 재무부 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이 위원장을 맡는다; 및
- (ii)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또는 의장이 위임한 감독 부문 부의장)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B) 본 법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의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구성원 전원의 서면 동의로 의결한다.
- (28) 주(State) - “주(State)”란 미합중국의 여러 주,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 및 미국의 각 영토를 의미한다.
- (29) 주 인가 예금기관 - “주 인가 예금기관(State chartered depository institution)”이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제 3(c)조(12 U.S.C. 1813(c))에서 정의된 “주 예금기관(State depository institution)”을 의미한다.
- (30)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 -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State payment stablecoin regulator)”이란 해당 주에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주요 규제 및 감독 권한을 가진 주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 (31)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State qualified payment stablecoin issuer)”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 (A) 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으로부터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을 받은 기관; 및

- (B) 통화감독관이 개정 법령 LXII 편에 따라 인가한 보험 미가입 국립은행, 연방 지점, 보험 가입 예금기관, 또는 이러한 국립은행·연방 지점·보험 가입 예금기관의 자회사가 아닌 기관.
- (32) 자회사 - “자회사(subsidiary)”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제 3 조(12 U.S.C. 1813)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 (33) 보험 가입 신용조합의 자회사 - “보험 가입 신용조합의 자회사(subsidiary of an insured credit union)”란 보험 가입 신용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 (A) 연방신용조합법(Federal Credit Union Act) 제 107(7)(I)조(12 U.S.C. 1757(7)(I))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신용조합의 일상적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 (B)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 12 편 712 부에 따라 정의된 신용조합 서비스 조직(credit union service organization)으로, 보험 가입 신용조합이 소유 지분을 보유하거나 대출을 제공한 조직; 및
- (C) 주법에 따라 인가된 주 인가 보험 가입 신용조합의 자회사..

### 제 3 조.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취급.

- (a) 발행자에 대한 제한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아닌 어떠한 자도 미국 내에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한다.
- (b) 제안 또는 판매 금지 -
- (1) 일반 규정 - (c)항 및 섹션 18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결제 스테이블코인이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내에서 해당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제안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한다.
- (2)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기술적으로 적법 명령 및 섹션 18에 따른 상호협약을 준수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준수할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도 미국 내에서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제안,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불법으로 한다.

(c) 제한적 보호 조항.-

(1) 일반 규정.-재무부 장관은 제(a)항으로부터의 예외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A) 본 법의 목적에 부합할 것;

(B) 범위가 제한될 것;

(C) 재무부 장관이 판단한 바에 따른 거래 규모가 소액일 것(de minimis).

(2) 이례적이고 긴급한 상황

(A) 일반 규정 - 재무부 장관이 이례적이고 긴급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a)항으로부터 제한적 예외규정을 제공할 수 있다.

(B) 정당성 - 본 항에 따른 제한적 예외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재무부 장관은 상원의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및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에게, 해당 이례적·긴급한 상황에 대한 판단의 정당성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공개 부록(classified annex)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d) 규정 제정 - 섹션 13에 따라, 재무부 장관은 이 섹션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

(e) 역외 효력 - 이 조항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역외 효력을 발휘하도록 의도되었다.

(f) 위반에 대한 처벌 -

(1) 일반 규정.- (a)항 위반에 고의적으로 참여한 자는 각 위반 건당 최대 1,000,000 달러의 벌금형,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그 양자를 선고받을 수 있다.

(2)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관 -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어떤 자가 (a)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사안을 이관할 수 있다.

(g) 처리 방식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하지 않은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다음과 같이 간주되지 않는다:

- (1) 회계상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 (2) 선물거래상, 파생상품 청산기관, 브로커-딜러, 등록 청산기관, 스왑 딜러의 현금 또는 현금성 증거금 및 담보로 적격한 자산;
- (3) 은행 조직 간의 도매 결제 또는 은행 조직 간 교환 및 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결제 인프라에서 사용하는 결제 자산.

(h) 해석 규정 -

- (1) 면제 거래.- 이 조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A) 중개자의 개입 없이, 두 개인이 각각 자신을 위해 합법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 자산의 직접 이전;
  - (B) 동일한 모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이 미국 내에서 소유한 계좌와 해외에서 소유한 계좌 간의 디지털 자산 수취 거래;
  - (C) 개인의 디지털 자산 자가 보관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지갑을 이용한 거래.
- (2) 재무부 권한 - 본 법의 어떠한 내용도, 미국 달러로 표시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결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거래를 차단, 제한,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재무부 장관의 기존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

**제 4 조.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a)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 (1) 일반 규정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A) 발행 중인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최소 1:1 비율로 뒷받침하는 식별 가능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준비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i) 미국 주화 및 통화(연방준비권 포함) 또는 연방준비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
    - (ii) 보험 가입 예금기관(해외 지점 또는 대리점, 예: 코레스폰던트 은행 포함)에서 보유한 요구불 예금(또는 요청 시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예금) 또는 보험 가입

출자금. 단, 해당 보험 가입 예금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및 국가 신용조합 관리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이 정한 한도를 따른다;

(iii) 국채 (단기(T-bills), 중기(T-notes), 장기(T-bonds)) -

(I) 남은 만기가 93 일 이하인 것; 또는

(II) 발행 시 만기가 93 일 이하인 것;

(iv)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증권 매도인으로 참여하며, 만기가 익일(overnight maturity)이고, 93 일 이하 만기의 국채로 담보된 환매조건부계약(Repo)으로 수취한 자금;

(v)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증권 매수인으로 참여하며, 만기가 익일이고, 국채(노트, 채권, 단기채)로 담보되며, 표준 시장 조건에 따라 초과 담보(overcollateralization)가 적용된 역환매조건부계약(Reverse Repo). 해당 계약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I) 삼자간(tri-party) 계약;

(I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청산기관을 통한 중앙 청산 방식;

(III) 심각한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충분한 신용도를 가진다고 발행자가 판단한 거래상대방과의 양자간(bilateral) 계약;

(vi) 1940 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제 8(a)조(15 U.S.C. 80a-8(a))에 따라 등록된 투자회사가 발행한 증권 또는 기타 등록된 정부 머니마켓펀드로서, (i)~(v)항에서 설명한 기초 자산에만 투자하는 상품.

(vii)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해당되는 경우 주(State)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유사한 유동성을 가진 연방 정부 발행 자산; 또는

(viii) (i)(vii)항에 설명된 준비금을 토큰화(tokenized form)한 형태로, 해당 준비금이 모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B) 발행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상환 정책을 공개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 (i) 미상환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적시 상환에 대한 명확하고 두드러진 절차를 마련하되, 적시 상환에 대한 재량적 제한은 섹션 7에 따라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관, 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만이 부과할 수 있다;
  - (ii)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구매 또는 상환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평이한 언어로, 공개적이고 명확하며 눈에 띄게 공시하되, 해당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사전 고지한 후에만 변경할 수 있다.
- (C) 발행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월별 준비금 구성 내역을 발행자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 (i) 발행자가 발행한 미상환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총 발행량;
  - (ii) (A)항에서 설명된 준비금의 금액 및 구성, 각 준비금 유형의 평균 만기 및 보관의 지리적 위치를 포함.
- (2) 재사용 금지(Rehypothecation 금지) - (1)(A)항에 따라 요구되는 준비금은, 다음의 목적 이외에는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담보 제공, 재사용 또는 재질권 설정할 수 없다:
- (A) (1)(A)항의 (iv), (v)항에 따른 허가된 준비금 투자와 관련된 마진 의무 이행;
  - (B) 표준 수탁 서비스의 사용, 수령 또는 제공과 관련된 의무 이행;
  - (C)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요청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동성 확보, 즉, 93일 이하 만기의 환매조건부계약(Repo)용으로 국채를 매도용 증권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i) 해당 환매조건부계약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청산기관을 통해 청산될 것; 또는
    - (ii)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 또는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해당되는 경우)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 (3) 월별 인증; 등록 공인회계법인의 보고서 검사

- (A) 일반 규정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매월, (1)(D)항에 따라 직전 월말 보고서에서 요구된 공개 정보에 대해 등록 공인회계법인(registered public accounting firm)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B) 인증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매월 해당 월별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인증서를 아래 기관 중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i)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관 또는
  - (ii) 발행자의 주(State)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
- (C) 형사 처벌 - (B)항에 따른 인증서를 허위 임을 알면서 제출한 자는 미합중국 법전 제 18 편 제 1350 조(c)에 규정된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는다.
- (4) 자본, 유동성 및 리스크 관리 요건
- (A) 일반 규정 -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또는 주(State)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경우 주(State)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섹션 13에 따라 다음을 시행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i)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적용되는 자본 요건으로서:
    - (I) 발행자의 사업모델 및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게 조정될 것;
    - (II) 발행자의 지속적 운영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III)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의 경우, 발행자의 지속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행자의 사업모델 및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게 조정된 자본 버퍼(capital buffer)를 포함할 수 있음;
  - (ii) (1)(A)항에 따른 유동성 기준;
  - (iii)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적용되는 준비자산 다변화, 은행 예치금 집중을 포함한, 이자율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서:
    - (I) 발행자의 사업모델 및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게 조정될 것;

(II) 발행자의 지속적 운영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iv) 은행 비밀 보호법 및 제재 준수 기준을 포함하여 적절한 운영, 규정 준수, 정보 기술 위험 관리 원칙 기반 요건 및 기준으로서, —

(I) 발행자의 사업모델 및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게 조정될 것;

(II) 해당 법률과 일치 할 것

(B) 해석 규정 - 이 항은 다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i)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이 항에서 기준을 규정할 때, 자본 구조, 사업모델 리스크 프로파일, 복잡성, 금융 활동(자회사 금융 활동 포함), 규모, 기타 리스크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발행자 또는 발행자 범주별로 기준을 차별화·조정할 수 있는 권한. 단, 이는 해당 발행자가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의 규제를 받는지 여부와는 무관해야 함; 또는

(ii)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감독, 규제, 집행 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기관이 감독하는 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

(C) 기존 자본 기준의 적용 가능성

(i) 정의 - 본 항에서 “예금기관 지주회사(depository institution holding company)”란 2010년 금융안정법(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 제 171(a)(3)조(12 U.S.C. 5371(a)(3))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ii) 금융안정법의 적용 - (A)항 및 본 항의 (iii), (iv)항에 따른 규정 제정에 있어, 금융안정법 제 171 조(12 U.S.C. 5371)는 적용되지 않는다.

(iii) 레버리지 자본 요건 또는 위험기반 자본 요건에 관한 규칙  
- 적격 연방 은행 감독기관이 발행하는, 보험 가입 예금기관 또는 예금기관 지주회사에 대해 통합 기준으로 부과되는 레버리지 자본 요건 또는 위험기반 자본 요건에 관한 규칙은, 해당 기관 또는 지주회사가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그 자산·운영을 통합 기준에 포함할 경우, 해당 발행자에 대해 (A)(i)항에 따른 자본 요건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규제 자본을 보유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iv) 수정 - 섹션 13에 따른 규정 제정 마감일 또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본 섹션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하는 날짜 중 더 이른 시점까지, 각 적격 연방 은행 감독기관은 (iii)항에 설명된 해당 규정이 (iii)항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5) 은행비밀법 및 제재법 하의 처리

(A) 일반 규정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경제 제재, 자금세탁 방지, 고객 식별, 실사 등과 관련하여 미국 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든 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i) 적절한 리스크 평가 및 감독 책임자를 지정한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유지;

(ii) 적절한 기록 보관;

(iii) 법령 위반 가능성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

(iv) 연방 또는 주 법령·규칙·규정 위반 거래 차단·동결·거부를 위한 기술 역량, 정책, 절차 보유;

(v)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계좌 보유자, 고액 거래, 강화된 실사 등과 관련한 고객 식별 프로그램 유지;

(vi) 연방법에 부합하는 제재 리스트 검증 등 효과적인 경제 제재 준수 프로그램 유지.

(B) 규정 제정 - 재무부 장관은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규모 및 복잡성에 맞춘 규정을 채택하여 (A)항을 이행한다.

(C) 권한 유보 - 본 법의 어떠한 내용도 미합중국 법전 제 31 편 제 53 장 제 2 하위장의 이행, 관리, 집행과 관련된 재무부 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6) 자산 차단 및 합법적 명령 준수를 위한 기술적 역량과 관련하여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의 협력.-

(A) 일반 규정 - 재무부 장관은:

- (i) 외국인 소유 재산 및 그에 대한 권리의 거래 차단·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해당 외국인의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발행자와 협력해야 한다;
  - (ii) 다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 사전 통지할 의무는 없다.
- (B) 적법 명령 준수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적법 명령의 조건을 준수할 기술적 역량이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경우에만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 (C) 보고 의무 - 본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 및 재무부 장관은 상원의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및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에 (필요시 기밀 부록 포함) (A)항에서 요구된 발행자 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D) 해석 규정 - 본 항은 외국 관할 내에서 발행된 외국 발행 디지털 자산의 제안과 관련된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의 권한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7) 결제 스테이블코인 활동의 제한
- (A) 일반 규정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다음 활동만 할 수 있다:
- (i)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 (ii) 결제 스테이블코인 상환;
  - (iii) 준비자산 관리(매수, 매도, 보유 또는 준비자산에 대한 수탁 서비스 제공 포함), 연방 및 주 법령 준수 하에;
  - (iv) 결제 스테이블코인, 필수 준비자산,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프라이빗 키에 대한 수탁 또는 보관 서비스 제공;
  - (v) (i)~(iv)항의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기타 활동.
- (B) 해석 규정 - (A)항은 허가된 발행자가 본 법에서 명시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활동 또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활동, 그리고 그 부수 활동을 주요 연방 또는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 모든 다른 연방 및 주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결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청구권은

준비자산과 관련해 비스테이블코인 채권자의 잠재적 청구권보다 우선한다(섹션 11 참조).

(8) 끼워팔기 금지(Prohibition on Tying)

(A) 일반 규정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고객이 추가 유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발행자 또는 그 자회사로부터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쟁사로부터 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기로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B) 규정 -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는 본 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다른 관련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과 협의하여, 본 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A)항의 예외를 규정이나 명령으로 허용할 수 있다.

(9) 기만적 명칭 사용 금지

(A) 일반 규정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다음 사항을 할 수 없다:

(i)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칭에 “United States”, “United States Government”, “USG” 등 미국 정부와 관련된 용어를 조합해 사용;

(ii)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다음 중 하나로 인식할 만한 방식으로 마케팅:

(I) 미합중국 법전 제 31 편 제 5103 조에서 규정한 법정화폐(legal tender);

(II) 미국이 발행한 것;

(III) 미국 정부가 보증 또는 승인한 것

(B) 연동형 스테이블코인(Pegged Stablecoins) - “USD”와 같은 연동 통화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약어는 (A)항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0) 감사 및 보고

(A) 연간 재무제표

- (i) 일반 규정 -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제 13(a)조 또는 제 15(d)조(15 U.S.C. 78m, 78o(d))의 보고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통합 총 발행액 500억 달러 초과인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라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에는 GAAP에서 정의된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 (ii) 감사인 - 등록 공인회계법인(registered public accounting firm)은 (i)항의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 (iii) 기준 - (ii)항의 감사는 공인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가 정한 모든 관련 감사 기준(감사인의 독립성, 내부통제, 특수관계자 거래 등 포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iv) 해석 규정 - 본 항은 공인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또는 등록 공인회계법인에 대한 관할권을 제한, 변경,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B) 공개 및 연방 규제기관 제출 - (A)항에 따라 감사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각 허가된 발행자는:
- (i) 해당 재무제표를 발행자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 (ii) 매년 해당 재무제표를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C) 협의 -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감사 감독의 모범 사례를 결정하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오도할 수 있는 사기, 중대한 허위 진술, 기타 재무 왜곡을 탐지하기 위해 공인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협의할 수 있다.
- (11) 이자 지급 금지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또는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사용·보관에 대해 현금, 토큰, 기타 대가 형태로 어떠한 이자나 수익도 지급할 수 없다.
- (12) 비금융 서비스 상장기업
- (A) 정의 - 본 항에서:
- (i) 금융활동(financial activities) - 금융활동은

(I)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제 4(k)조(12 U.S.C. 1843(k))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II) 명확히 하기 위해, 본 법 제 2(7)조 (A), (B)항 및 제 4(a)(7)(A)항에 설명된 활동을 포함한다.

(ii) 상장기업(public company) - “상장기업”이란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제 13(a)조 또는 제 15(d)조(15 U.S.C. 78m(a), 78o(d))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발행자를 의미한다.

(B) 금지(Prohibition)

(i) 일반 규정 - 주요 금융 활동(financial activities)에 주로 종사하지 않는 상장기업(public company) 및 그 완전 또는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및 계열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즉,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의 만장일치 찬성 표결을 통해 아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I) 미국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 미국 금융 안정성, 또는 예금보험기금에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을 것;

(II) 상장기업(public company)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스테이블코인 거래 데이터로부터 얻은 비공개 개인 정보를-

(aa) 광고 또는 기타 콘텐츠를 타겟팅, 개인화, 순위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

(bb) 제 3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

(cc) 비계열사에게 공유하지 않을 것;

(III) 상장기업 및 그 계열사는 (8)항의 끼워팔기 금지 규정을 준수할 것.

(ii) 예외 - (i)항의 소비자 정보 공유 금지는 아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연방, 주, 지방의 법령, 규칙, 기타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준수를 위해 정보 공유하는 경우;

(II) 연방, 주, 지방 당국의 적법한 민사, 형사, 규제 조사, 소환장, 영장 준수를 위해 정보 공유하는 경우;

(III) 상장기업 관할의 사법 절차 또는 정부 규제기관 요청에 대응하는 경우.

(C) 금지의 확장(Extension of Prohibition)

(i) 일반 규정 - 미국 또는 그 영토에 본점을 두지 않고, 주요 금융 활동에 주로 종사하지 않는 회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즉,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찬성 표결을 통해 아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I) 미국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 미국 금융 안정성, 또는 예금보험기금에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을 것;

(II) 상장기업(public company)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스테이블코인 거래 데이터로부터 얻은 비공개 개인 정보를-

(aa) 광고 또는 기타 콘텐츠를 타겟팅, 개인화, 순위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

(bb) 제 3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

(cc) 비계열사에게 공유하지 않을 것; 단,

(III) 상장기업 및 그 계열사는 (8)항의 끼워팔기 금지 규정을 준수할 것.

(ii) 예외 - (i)항의 소비자 정보 공유 금지는 아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연방, 주, 지방의 법령, 규칙, 기타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준수를 위해 정보 공유하는 경우;

(II) 연방, 주, 지방 당국의 적법한 민사, 형사, 규제 조사, 소환장, 영장 준수를 위해 정보 공유하는 경우;

(III) 상장기업 관할의 사법 절차 또는 정부 규제기관 요청에 대응하는 경우.

(D) 규정 제정(Rulemaking)- 본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는 본 항의 적용에 관한 해석 규정을 발행해야 한다.

(13) 적격성(Eligibility) - 본 법은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따라 연방준비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신 또는 연방준비은행에 예금할 법적 적격성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4) 해석 규정(Rule of Construction) - 본 조항(Section)의 준수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제공과 관련해 적용될 수 있는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의 추가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 통화감독관의 규제(Regulation by the Comptroller)

(1) 일반 규정 - 개정 법령(Revised Statutes) 제 5136C 조(12 U.S.C. 25b), 주택소유자대출법(Home Owners' Loan Act) 제 6 조(12 U.S.C. 1465), 또는 인허가 및 감독에 관한 주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법 제 5 조에 따라 통화감독관(Comptroller)이 승인한 연방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통화감독관이 독점적으로 인허가, 규제, 검사 및 감독한다. 이 과정에서 통화감독관은 다른 관련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 및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금융 안정을 보장하고 (a)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 및 명령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2) 관련 개정 - 개정 법령 제 324(b)조(12 U.S.C. 1(b))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연방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규제 - 통화감독관은 다른 관련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GENIUS 법 제 13 조에 따라 금융 안정을 보장하고 같은 법 제 4(a)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 및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c) 주 차원의 규제 체계(State-Level Regulatory Regimes)

(1) 주 차원 규제 선택권 - 연방 규제체계에도 불구하고, 통합 총 발행액이 100억 달러 이하인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주 규제 체계가 본 법의 연방 규제체계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주 차원의 규제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

(2) 원칙 - 재무부 장관은 고시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 차원 규제체계가 본 법의 연방 규제체계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광범위한 원칙을 수립한다.

(3) 검토 -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2)항에서 재무부 장관이 수립한 원칙에 따라 주 차원 규제체계를 검토하며, 섹션 7(f) 이행에 필요한 협력 협정을 마련할 목적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4) 인증 -

(A) 초기 인증 - (B)항에 따라, 본 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에 해당 주 규제체계가 (2)항에 따른 실질적 유사성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하는 초기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인증 형식 - (A)항에 따른 초기 인증서는,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가 정한 형식으로, 해당 주 규제체계가 (2)항에 따른 실질적 유사성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포함해야 한다.

(C) 연례 재인증 - 매년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날짜까지,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A)항에 따른 초기 인증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추가 인증서를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인증 심사(Certification Review)

(A) 일반 규정 -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4)항에 따라 초기 인증 또는 재인증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는:

(i) 만장일치로 해당 주 규제체계가 (a)항의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한다고 판단한 경우 인증을 승인하거나;

(ii) 인증을 거부하고, 거부 사유를 설명한 서면 설명서를 해당 주(State) 규제기관에 제공하여, 주 규제기관 및 주 차원 규제체계가 (a)항의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필요한 변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B) 재인증 - 주(State)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4)항에 따라 제출한 재인증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는 재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i) 이전 인증 이후 주(State) 규제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거나 중요한 환경 변화가 있었고;

(ii) 그 변경이나 변화로 인해 해당 주(State) 규제체계가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을 촉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 개선 기회(Opportunity to Cure)

- (i) 일반 규정 - (A) 또는 (B)항에서 설명된 거부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는 해당 주 규제기관에, 거부 통지일로부터 최소 180 일의 개선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 (I) 필요한 변경을 수행하여 해당 주(State) 차원 규제체계가 (a)항에서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하고;
  - (II) 초기 인증서 또는 재인증서를 재제출해야 한다.
- (ii) 거부(Denial) - 주(State)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i)항에 따라 초기 인증서 또는 재인증서를 재제출한 후,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가 다시 거부 결정을 내릴 경우, 위원회는 그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 규제기관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D) 거부에 대한 항소(Appeal of Denial) -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C)(ii)항에 따라 받은 거부 결정에 대해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에 항소할 수 있다.
- (E) 재제출 권리(Right to Resubmit) - 본 항에 따라 거부된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4)항에 따른 새로운 인증서를 재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 (6) 목록(List) - 재무부 장관은 (4)항에 따라 초기 인증서 및 재인증서를 제출한 주들의 목록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및 재무부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유지해야 한다.
- (7) 기존 규제체계의 신속 인증(Expedited Certifications) -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는, 본 법 제정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디지털 자산 또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감독을 위한 건전성 규제체계(규정·지침 포함)를 운영 중인 주에 대해, 본 항의 인증 절차를 본 법 발효일 이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d) 연방 감독으로의 전환(Transition to Federal Oversight)
  - (1) 예금기관 - 주(State) 인가 예금기관으로서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인 기관이 100 억 달러 초과 통합 총 발행액의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경우:

- (A) 해당 임계치에 도달한 날로부터 360 일 이내에, 주 및 연방 규제기관의 공동 감독 하의 연방 규제체계로 전환하거나;
- (B) 해당 임계치에 도달한 날부터, 통합 총 발행액이 100 억 달러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신규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
- (2) 기타 기관 -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100 억 달러 초과 통합 총 발행액의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경우:
- (A) 해당 임계치에 도달한 날로부터 360 일 이내에, 관련 주 규제기관 및 통화감독관이 공동으로 감독하는 (a)항의 연방 규제체계로 전환하거나;
- (B) 해당 임계치에 도달한 날부터, 통합 총 발행액이 100 억 달러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신규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
- (3) 면제(Waiver)
- (A) 일반 규정 - (1), (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100 억 달러 초과 통합 총 발행액을 가진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주 규제기관의 단독 감독 하에 남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 (B) 면제 기준 - 면제 여부 판단 시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다음 배타적 기준만 고려한다:
- (i) 주(State)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 유지 상태;
  - (ii)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과거 운영 및 심사 이력.
  - (iii) 주(State) 규제기관의 결제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 감독 경험;
  - (iv) 결제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주(State)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규제 및 지침을 포함한 감독 체계
- (C) 해석 규정
- (i) 연방 감독 - (1), (2)항에 따라 연방 감독 대상이 된 주 적격 발행자는 본 항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주 규제기관과 주요 연방 규제기관의 공동 감독을 받게 된다. 본 항은 연방 인가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 (ii) 주 감독 - 본 법 제정일로부터 90 일 전까지 디지털 자산·결제 스테이블코인 감독용 건전성 규제체계를 수립하고 (c)항에 따라 인증을 받았으며 1 개 이상 발행자를 승인한 주 규제기관은, 연방 규제기관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B)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미국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안전성·건전성 리스크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본 항의 면제를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e) 보험 적용 상태에 대한 허위 표시(Misrepresentation of Insured Status)

- (1) 일반 규정 -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정부의 전폭적 신용(backed by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the United States)에 의해 보증되지 않으며,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지 않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예금보험이나 국가신용조합관리청(NCUA) 출자금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보험 적용 상태 허위 표시

- (A) 일반 규정 - 결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정부의 전폭적 신용으로 보장되거나, 미국 정부에 의해 보증되거나, 연방 예금보험 또는 연방 출자금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 (B) 처벌 - (A)항 위반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제 18(a)(4)조(12 U.S.C. 1828(a)(4)) 또는 미합중국 법전 제 18 편 제 709 조 위반으로 간주된다.

(3) 마케팅

- (A) 일반 규정 - 본 법에 따라 발행되지 않은 상품을 미국 내에서 결제 스테이블코인으로 마케팅하는 것은 불법이다.

- (B) 처벌 - 고의적·의도적으로 (A)항을 위반한 자는 재무부에 의해 각 위반 건당 최대 50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C) 위반 건수 산정 - (B)항의 벌금 부과 시, 다음에 해당하는 개별 비준수 행위는 단일 위반으로 간주된다:

- (i) 공통 또는 상당히 중복된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

- (ii) 동일한 진술이나 게시물에서 비롯된 경우.

(D) 재무부 장관에 이관 -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고의적·의도적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재무부 장관에게 해당 사안을 이관해야 한다.

(f)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된 임직원

(1) 일반 규정 - 내부자 거래, 횡령,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금융사기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A)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임원으로, 또는

(B)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2) 처벌

(A) 일반 규정 - (1)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는 각 위반 건당 최대 100 만 달러의 벌금,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그 양자를 선고받을 수 있다.

(B)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 -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고의적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사안을 이관해야 한다.

(g) 연방 저축협회 준비금에 대한 명확화 - 주택소유자대출법(Home Owners' Loan Act, 12 U.S.C. 1461 et seq.)에 따라 설립된 연방 저축협회가 섹션 4(a)(1)의 요건을 충족하는 준비금을 보유한 경우, 해당 준비자산에 관해서는 동 법 제 10(m)조(12 U.S.C. 1467a(m))에 규정된 적격 저축 대출자 테스트(qualified thrift lender test)를 충족할 필요가 없다.

(h) 규정 제정(Rulemaking)

(1) 일반 규정 - 제 13 조에 따라,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그리고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필요시, 본 조항(Section)의 요건 이행 및 탈법 방지를 위한 조건 설정 등을 포함하여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수립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2) 규정의 공동 제정 - 본 조항(Section) 이행을 위한 모든 규정은,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아닌 한,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들이 공동으로 제정해야 한다.

(i) 해석 규정(Rules of Construction) - 본 법은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1)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가 대중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 (2) 정부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이 관장하는 윤리 관련 법령·규정 또는 상·하원 윤리 규칙(미합중국 법전 제 18 편 제 208 조,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 5 편 제 2635.702 조 및 제 2635.802 조)의 지속적 적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정부윤리법 및 상·하원 윤리 규칙은 현직 국회의원 또는 고위 행정부 관리가 공직 재임 중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항에서, 미합중국 법전 제 18 편 제 202 조에 명시된 직원은 제 208 조 준수를 위해 행정부 직원으로 간주된다.

## 제 5 조. 보험 가입 예금기관 자회사 및 연방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승인

(a) 신청(Application)

(1) 일반 규정 - 각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A)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자회사를 통해 발행하려는 보험 가입 예금기관, 그리고 개정법령 LXII 편에 따라 통화감독관(Comptroller)이 인가한 비은행기관, 연방 지점, 또는 보험 미가입 국립은행 중 연방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관의 신청서를 접수, 검토, 승인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B) 해당 기관들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인허가, 규제, 검사 및 감독을 위한 절차 및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2) 규정 제정 및 신청 처리 권한 -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섹션 13 에 명시된 날짜 이전까지:

(A) 해당 조항과 일치하는 규정을 발행하여 본 조항을 이행하고;

(B) (A)항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1)항에서 설명한 신청서를 접수·처리해야 한다.

- (3) 의무적 승인 절차 -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완비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본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신청서를 평가하고 결정해야 한다.
- (b) 신청서 평가(Evaluation of Applications) - (a)항에 따라 접수된 실질적으로 완비된 신청서는 (c)항에서 설명된 요인들을 사용하여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평가한다.
- (c) 고려해야 할 요인(Factors to Be Considered) - 이 항에서 언급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신청자(또는 보험 가입 예금기관 신청자의 경우, 그 자회사)가 재무 상태 및 자원을 바탕으로 섹션 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2) 내부자 거래, 횡령, 사이버 범죄,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금융사기와 관련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신청자의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 중인지 여부.
  - (3) 신청자, 그 자회사, 모회사의 임원, 이사, 주요 주주의 역량, 경험, 청렴성, 포함:
    - (A) 해당 임원, 이사, 주요 주주의 법령 및 규정 준수 이력;
    - (B) 해당 임원, 이사, 주요 주주가 이번 신청 및 과거 신청과 관련해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부과한 약속 및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 (4) 신청자의 상환 정책이 4(a)(1)(B) 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5)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정한 기타 요인.
- (d) 결정 시한 및 거부 사유(Timing for Decision; Grounds for Denial)
- (1) 결정 시한
    - (A) 일반 규정 -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a)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완비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B) 실질적 완비 여부

- (i) 일반 규정 - (A)항에서, 신청서는 (c)항의 요인 충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완비된 것으로 간주한다.
- (ii) 통지 - (a)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신청자에게 신청서가 실질적으로 완비되었는지, 아니면 추가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통지해야 한다.
- (iii) 환경의 중대한 변화 - 본 호에 따라 실질적으로 완비된 것으로 간주된 신청서도, 중대한 환경 변화가 발생하면 새로운 신청서로 취급될 수 있다.

(2) 신청 거부(Denial of Application)

(A) 거부 사유

- (i) 일반 규정 -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a)항에 따라 접수된 실질적으로 완비된 신청서에 대해, (c)항에서 설명한 요인을 근거로 신청자의 활동이 안전하거나 건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
- (ii) 개방형, 공용, 탈중앙 네트워크에서의 발행은 거부 사유 아님 - 개방형(open), 공용(public), 탈중앙(decentralized) 네트워크에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만으로는 (a)항 신청서의 유효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

- (B) 설명 의무 -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a)항에 따른 완비된 신청서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신청서에서 확인된 모든 중대한 결함 및 그에 대한 실질적 개선 권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청문 기회 및 최종 결정

- (i) 일반 규정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에 청문 기회를 요청하여 거부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다.
- (ii) 시한 - 적시에 청문 요청을 접수하면, 규제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서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두 진술·주장을 할 수 있는 일시 및 장소를 공지해야 한다.

- (iii) 최종 결정 - 청문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규제기관은 신청자에게 최종 결정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결정에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사유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iv) 청문 미요청 시 통지 - 신청자가 적시에 청문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규제기관은 청문 요청 가능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거부가 최종 결정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3) 결정 미이행 시(Failure to Render a Decision) - 규제기관이 (1)항의 시한 내에 완비된 신청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신청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 (4) 재신청 권리(Right to Reapply) - 본 섹션에 따른 신청 거부는 신청자가 후속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e) 대기 중인 신청서 보고(Reports on Pending Applications) - 각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 (1) 본 법에 따라 신청서 처리를 시작할 때 의회에 통보하고;
  - (2) 매년, 접수일로부터 180 일 이상 대기 중이며 미완 상태로 통지된 신청서들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신청서들의 상태 및 미승인 이유에 대한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f) 대기 중인 신청서에 대한 보호조항(Safe Harbor for Pending Applications) -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본 법 발효일로부터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음에 대하여 본 법 요건의 적용을 면제 할 수 있다.
- (1) 보험 가입 예금기관의 자회사(발효일 기준 발행자 신청서가 대기 중인 경우); 또는
  - (2) 발효일 기준 신청서가 대기 중인 연방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g) 규정 제정(Rulemaking) - 제 13 조에 따라,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되, 제 4 조에서 명시한 요건을 초과하는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
- (h) 타 인허가 요건과의 관계(Relation to Other Licensing Requirements) - 본 조항의 규정은, 본 조항에 따라 허가된 연방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나 보험 가입

예금기관 또는 신용조합의 자회사에 대한 주 차원의 인가, 라이선스, 기타 영업 허가 요건을 대체·우선한다. 단, 본 항은 주(State) 해당 주에서 인가받은 예금기관 또는 신용조합이나 그 자회사를 인가, 라이선스, 감독, 규제할 권한을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i) 인증 요건(Certification Required)

(1) 일반 규정 - 승인일로부터 180 일 이내 및 매년 thereafter, 각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연방 발행자인 경우 주요 연방 규제기관에, 주 발행자인 경우 주 규제기관에, 자금세탁 방지 및 경제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을 인증해야 하며, 특히 마약 카르텔 및 외국 테러조직(이민 및 국적법 제 219 조(8 U.S.C. 1189))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2) 인증서 제공 - 연방 및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요청 시 재무부 장관에게 (1)항의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처벌(Penalties)

(A) 승인 취소(Approval Revocation) - (1)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해당 발행자의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 또는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본 섹션에 따른 발행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B) 형사 처벌(Criminal Penalty)

(i) 일반 규정 - (1)항에 따라 고의로 허위 인증서를 제출한 자는 미합중국 법전 제 18 편 제 1001 조(허위 진술죄)에 명시된 형사 처벌을 받는다.

(ii) 법무부 장관 이관 - 연방 또는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어떤 자가 (1)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제기관은 사건을 연방 법무부 장관 또는 발행자의 주재 주(Host State)의 법무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다.

**제 6 조. 연방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보험 가입 예금기관 자회사에 대한 감독 및 집행**

(a) 감독(Supervision)

- 
- (1) 일반 규정 -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아니며, 통합 총 발행액이 100 억 달러 미만인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해당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 (2) 보고서 제출 - (1)항에 해당하는 허가된 발행자는, 요청 시 해당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에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A) 발행자의 재무 상태;
  - (B) 발행자의 재무 및 운영 리스크 모니터링·통제 시스템;
  - (C) 발행자(및 그 자회사)의 본 법 준수 여부;
  - (D) 연방 적격 비은행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및 재무부 장관이 시행하는 제재법 준수 여부.
- (3) 조사(Examinations) -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1)항에 해당하는 발행자를 조사해야 한다
- (A) 발행자의 사업 운영 및 재무 상태의 성격;
  - (B) 발행자 내부의 재무·운영·기술·기타 리스크가 다음에 위협이 될 가능성;
    - (i) 발행자의 안전성과 건전성
    - (ii)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 (C) (B)항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통제하기 위한 발행자의 시스템
- (4) 효율성 요건
- (A) 기존 보고서 활용 - 규제기관은 발행자 감독·검사 시 최대한 기존 보고서 및 감독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 (B) 중복 방지 - 규제기관은 검사 활동, 보고 요건, 자료 요청에서 최대한 중복을 피해야 한다.
-

(C) 부담 고려 - 규제기관은 검사 또는 보고 요청 시, 유사한 기관에 요구되는 빈도 및 형식과 유사한 수준으로만 요청해야 한다.

(b) 집행(Enforcement)

(1) 등록 중단 또는 취소 - 주 적격 발행자가 아니며, 통합 총 발행액이 100억 달러 미만인 허가된 발행자에 대해, 주요 연방 규제기관은 발행자 또는 그 소속 기관(affiliated party)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할 수 있다.

(A) 본 법 또는 본 법에 따른 규정·명령을 고의 또는 무모하게 위반하거나,

(B) 발행자와 규제기관 간 서면 합의 또는 규제기관이 서면으로 부과한 조건을 고의 또는 무모하게 위반한 경우,

(2) 중지·시정 명령(Cease-and-Desist Proceedings) - 연방 규제기관이 발행자(발행액이 100억 달러 미만인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아닌) 또는 그 소속 기관이 본 법, 관련 규정·명령, 서면 합의 또는 서면 부과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반 시도 중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다음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A) 해당 위반이나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또는

(B) 위반이나 행위로 발생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

(3) 해임 및 참여 금지 권한(Removal and Prohibition Authority) -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아닌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해당 발행자의 institution-affiliated party(기관 소속자)를 그 직위에서 해임하거나, 해당 발행자 또는 모든 허가된 발행자의 업무 참여를 금지할 수 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A) 해당 기관 소속자가 본 법 또는 본 법에 따라 발행된 규정·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한 경우;

(B) 해당 기관 소속자가 미합중국 법전 제 31 편 제 53 장 제 II 소장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절차(Procedures)

- (A) 일반 규정 - 규제기관이 (1), (2), (3)항에 따른 위반 또는 위반 시도를 확인하면, 연방예금보험법(FDIA) 제 8 조(b), (e)항(12 U.S.C. 1818) 또는 연방신용조합법(FCUA) 제 206 조(e), (g)항(12 U.S.C. 1786)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B) 사법적 심사 - 이 하위항목에 따른 최종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FDIA 제 8 조(h)항 또는 FCUA 제 206 조(j)항에서 규정된 방식으로만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C) 금지 명령(Injunction) - 규제기관은, 필요 시, FDIA 제 8 조(i)(1)항 또는 FCUA 제 206 조(k)(1)항에서 규정된 절차를 따라 본 항목에 따라 발행된 유효한 통지나 명령을 사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 (D) 임시 중지 명령(Temporary Cease-and-Desist) - 규제기관이, 본 법 위반 또는 위반 시도, 또는 (1), (2), (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그 지속이 발행자의 지급불능, 자산·수익의 증대한 유출, 재무 건전성 약화, 또는 고객 이익에 증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FDIA 제 8 조(c)항 또는 FCUA 제 206 조(f)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시 중지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 (5) 민사 벌금(Civil Money Penalties)
- (A) 승인 미이행 - 제 3 조 위반으로 미 달러 표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그러한 발행에 고의로 관여한 기관 소속자는 발행 일당 최대 10 만 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 (B) 1 단계(Tier 1) - (A)항 제외, 본 법 또는 이에 따른 규정·명령, 서면 합의 또는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발행자 또는 그 기관 소속자는 위반일당 최대 10 만 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 (C) 2 단계(Tier 2) - (A)항 제외, (B)항의 벌금 외에, 고의로 위반에 참여한 발행자 또는 그 기관 소속자는 위반일당 추가로 최대 10 만 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 (D) 절차 - 해당 벌금은 FDIA 제 8 조(i)(2)항 또는 FCUA 제 206 조(k)(2)항의 절차에 따라 규제기관이 부과·징수할 수 있다.

- (E) 퇴직 후 통지 및 명령 - 기관 소속자의 사직, 해고, 계약 종료(발행자 폐업 포함)는, 그 종료일로부터 6년 이내에 해당 소속자에게 통지 또는 명령을 발행하고 본 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규제기관의 관할권 및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 주 적격 발행자 비적용(Non-Applicability to a State Qualified Payment Stablecoin Issuer) - 본 하위 조항은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c) 해석 규정(Rule of Construction) - 본 법은 연방 소비자 금융법(예: 12 U.S.C. 5515 및 15 U.S.C. 41 et seq.)에 따른 권리나 구제책을 수정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제 7 조.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State Qualifi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 (a) 일반 규정(In General) -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해당 주의 모든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감독, 검사, 집행 권한을 가진다.
- (b) 연준과의 협약 체결 권한(Authority to Enter into Agreements with the Board) -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와 상호 합의하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준이 해당 주의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본 법의 감독, 검사,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 (c) 정보 공유(Sharing of Information) -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과 연준은 해당 주의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여기에는 최초 신청서 및 모든 첨부 문서 사본이 포함된다.
- (d) 규정 제정(Rulemaking) -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은, 섹션 4에 따라,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적용되는 명령 및 규정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연방 규제기관이 주 적격 발행자가 아닌 허가된 발행자에게 적용하는 명령 및 규정의 범위와 동일하다.
- (e) 비상 상황에서의 집행 권한(Enforcement Authority in Unusual and Exigent Circumstances)
- (1) 이사회(연준)
- (A) 일반 규정 - 이사회(연준)가 비상 및 긴급 상황(unusual and exigent circumstances)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최소 48시간 전에 해당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해당 주의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또는 그 소속 기관에 대해 본 법 위반에 따른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규정 제정 - 제 13 조에 따라, 이사회(연준)는 본 항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비상 및 긴급 상황의 범위를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C) 제한 사항

이사회(연준)이 (A)항에 따라 비상 및 긴급 상황을 판단한 후, 주 적격 발행자의 활동이 그 자체로 심각한 재무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위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제한(상환 제한)을 지시할 수 있다. 이 지시는 사실상 최종 효력을 가진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으로 간주되며, 다음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i) 발행자, 지주회사, 그 자회사·계열사 간 거래;

(ii) 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의 채무가 발행자에게 전가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발행자의 활동

(D) 지시 검토(Review of Directive)

(i) 행정 검토(Administrative Review)

(I) 일반 규정 - 지시를 받은 발행자 또는 소속 기관은 연준에 서면으로 이 지시의 변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II) 자동 소멸 - 이사회(연준)가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시를 유지, 변경 또는 철회하지 않으면, 해당 지시는 자동 소멸된다.

(ii) 사법적 검토(Judicial Review)

(I) 일반 규정 - 이사회(연준)가 지시를 유지 또는 변경한 경우, 이해당사자는 즉시 본점 소재지 관할 연방지방법원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지시의 정지, 변경, 종료 또는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다.

(II) 특별 사유 구제 - 특별한 사유(extraordinary cause)가 입증된 경우, 관련 당사자는 (i)항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통화감독관(Comptroller)

(A) 일반 규정 - 통화감독관이 비상 및 긴급 상황을 판단한 경우, 최소 48 시간 전에 해당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에 서면 통지한 후, 비은행(nonbank)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본 법 위반에 따른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규정 제정 - 제 13 조에 따라, 통화감독관은 본 항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비상 및 긴급 상황의 범위를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C) 제한 사항(Limitations) - (A)항에 따라 비상 및 긴급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후, 통화감독관(Comptroller)은 비은행(nonbank)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활동 지속이 해당 발행자의 재무적 안전성·건전성·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을 부과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에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발행자 및 그 계열사에 대한 사실상 최종 효력을 가진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의 형식으로 발행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i) 발행자, 지주회사, 그 자회사·계열사 간 거래;

(ii) 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의 채무가 발행자에게 전가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발행자의 활동

## (D) 지시 검토(Review of Directive)

## (i) 행정 검토(Administrative Review)

(I) 일반 규정 - (C)항의 지시가 발행된 후, 해당 연방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나 그 소속 기관은 통화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지시의 변경·철회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

(II) 자동 소멸 - 통화감독관이 제출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지시를 유지, 변경, 철회하지 않으면, 해당 지시는 자동 소멸된다.

## (ii) 사법적 검토(Judicial Review)

(I) 일반 규정 - 통화감독관이 지시를 유지 또는 변경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즉시 본점 소재지 관할 연방지방법원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지시의 정지, 변경, 종료,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다.

(II) 특별 사유 구제 - 특별한 사유(extraordinary cause)가 입증된 경우, 관련 당사자는 (i)항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f) 주법에 대한 영향(Effect on State Law)

(1) 호스트 주법(Host State Law) -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스트 주의 주법(소비자 보호법 포함)은 해당 호스트 주에서 영업 중인 타 주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활동에 대해, 해당 호스트 주에서 영업 중인 타 주 연방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활동에 적용되는 범위만큼만 적용된다.

(2) 홈 주법(Home State Law) - (1)항에 따라 호스트 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발행자의 홈 주(설립 주) 법률이 호스트 주에서 수행되는 발행자 활동에 적용된다.

(3) 적용 범위(Applicability)

(A) 일반 규정 - 본 하위항목은 제 4 조 (c)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주에서 인가·라이선스·영업 허가를 받은 타 주 주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만 적용된다.

(B) 제외 - (1)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에는, 본 법에 따라 호스트 주에서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서의 인가·라이선스·영업 허가를 규율하는 호스트 주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4) 해석 규정(Rule of Construction) - 허가·인가·라이선스·영업 허가에 관한 주법을 제외하고, 본 법은 주 소비자 보호법(관습법 포함) 및 그에 따른 구제책을 선점(preempt)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

**제 8 조. 자금세탁 방지 보호조치(Anti-Money Laundering Protections)**

(a) 해외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발행분(Payment Stablecoins Issued by a Foreign Payment Stablecoin Issuer)

(1) 일반 규정 - 해외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해당 발행자가 적법한 명령(lawful order)을 준수할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내에서 공공에게 공개적으로 제공, 판매, 또는 거래 가능 상태로 만들 수 없다.

(2) 집행(Enforcement)

(A) 권한 - 재무부 장관은, (1)항을 위반해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공개적으로 제공, 판매, 또는 거래 가능하게 만든 해외 발행자를 비준수(noncompliant)로 지정할 권한을 가진다.

(B) 비준수 지정 - 재무부가 (1)항을 위반하는 해외 발행자를 식별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은 관련 연방기관들과 협력해 해당 해외 발행자를 비준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서면 통지한다.

(3) 항소(Appeal) - 본 항에 따른 비준수 결정은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의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b) 지정 공표 및 2 차 거래 금지(Publication of Designation; Prohibition on Secondary Trading)

(1) 일반 규정 - 해외 발행자가 서면 통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적법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단, (c)항의 예외 있음), 재무부 장관은:

(A) 비준수 결정과, 해당 발행자가 서면 통지 이후에도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하고;

(2) 금지 효력 발생일 - (1)항에 따른 2 차 거래 금지 효력은 연방 관보에 금지 통지가 발행된 날로부터 30 일 후에 발생한다.

(3) 금지 만료

(A) 일반 규정 - (1)(B)항의 2 차 거래 중개 금지는 재무부 장관이 해당 해외 발행자가 더 이상 비준수 상태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시점에 만료된다.

(B) 규정 제정 - 제 13 조에 따라, 재무부 장관은 해외 발행자가 비준수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C) 공표 - (A)항의 결정 시, 재무부 장관은 해당 해외 발행자가 (B)항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상세히 설명한 성명을 연방 관보에 공표해야 한다.

(4) 민사 벌금(Civil Monetary Penalties) - 재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 (1)(B)항에 따른 금지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위반 건당 일일 최대 \$100,000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 해외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비준수 결정이 공표된 후에도 미국 내에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계속 공개 제공하는 경우, 위반 건당 일일 최대 \$1,000,000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무부 장관은 미국 내 또는 미국 국민과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연방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C) 위반 건수 산정 - 동일한 발생 원인 또는 상당히 중첩된 발생 원인에서 비롯된 불이행 행위는 하나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다만, 재무부 장관은 중대한 과실, 무모한 무시, 또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제재 회피 규정에 대한 무관심의 반복 패턴이 인정될 경우, 복수의 불이행 행위를 개별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D) 민사소송 개시. 재무부 장관은 미국 지방 법원에서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 (A) 또는 (B)항에 따른 민사 벌금 징수;

(ii) 해외 발행자의 미국 내 또는 미국 국민과의 금융 거래 금지를 위한 금지명령 청구;

(iii)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해외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 청구.

(c) 면제 및 라이선스 권한 예외(Waiver and Licensing Authority Exemptions)

(1) 일반 규정 - 재무부 장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국 내 인물이 (b)(1)(B)항에 따른 2차 거래에 관여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면제(waiver), 일반 라이선스(general license), 또는 개별 라이선스(specific license)를 발급할 수 있다:

- (A) 2 차 거래 금지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B) 해외 발행자가 비준수 결정의 원인이 된 적법한 명령 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2) 국가안보 면제(National Security Waiver) - 재무부 장관은 국가정보국장 및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b)(1)(B)항에 따른 2 차 거래 제한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 (3) 정보·법집행 활동 면제 -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다음 활동에 대해 본 섹션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 (A) 국가안보법 제 5 편(50 U.S.C. 3091 등)에 따른 보고 요건 대상 활동 또는 미국의 승인된 정보 활동;
  - (B) 미국의 법집행 활동 수행 또는 지원에 필요한 활동.
- (4) 보고 요건 - (1), (2), (3)항에 따라 면제 또는 라이선스를 발급한 후 7 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은 상·하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및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에게, 필요 시 기밀 부록을 포함하여, 면제 또는 라이선스의 내용, 근거가 된 사실 및 사정을 보고하고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
- (d) 해석 규정(Rule of Construction) - 본 법은 미국 관할 내에서 미국 달러 기준 또는 표시 결제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차단, 제한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재무부 장관의 기존 권한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제 9 조. 자금세탁방지 혁신(Anti-Money Laundering Innovation)

- (a) 공공 의견 수렴(Public Comment) - 본 법 발효일로부터 30 일 후 시작해 60 일간, 재무부 장관은 다음과 관련하여, 규제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 활동(예: 자금세탁) 탐지에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잠재력이 있는 혁신적 또는 새로운 방법, 기법, 전략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1)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s);
  - (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3) 디지털 신원 확인(Digital Identity Verification);

(4) 블록체인 기술 및 모니터링(Blockchain Technology and Monitoring).

(b) 재무부 연구(Treasury Research)

(1) 일반 규정 - (a)항의 공공 의견 수렴 종료 후, 재무부 장관은 해당 기간 동안 확인된 혁신적·새로운 방법, 기법, 전략에 대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2) 연구 요소 - 재무범죄단속국(FinCEN)은 (1)항에서 확인된 각 방법, 기법, 전략에 대해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다음 요소를 평가·고려해야 한다:

(A)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 활동 탐지 능력 향상;

(B) 규제 금융기관에 대한 비용;

(C) 수집·검토되는 정보의 양 및 민감성;

(D) 수집·검토되는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위험;

(E) 운영상의 도전 과제 및 효율성 고려사항;

(F) 사이버보안 위험;

(G) 불법 금융 완화에서의 효과성.

(c) 재무부 위험 평가(Treasury Risk Assessment) - 「적성국 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제 261·262 조에 따른 테러 및 기타 불법 자금조달 대응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재무부 장관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 디지털 자산 관련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와 같은 불법 행위의 출처;

(2)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 행위를 탐지하는 데 있어 기존 금융기관의 기존 방식, 기법, 전략의 효과 및 허점;

(3) 혁신적 방식, 기법, 전략의 사용 및 개발에 대한 기존 규제 체계의 영향;

(4) 디지털 자산을 통해 법정화폐(fiat currency)를 취득하는 데 있어 불법 행위 촉진 위험이 높은 외국 관할구역.

(d) FinCEN 지침 또는 규정 제정(FinCEN Guidance or Rulemaking) - 본 법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무범죄단속국(FinCEN)은 본 조에 따른 연구 및 위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에 관한 공개 지침과 고시·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한다:

- (1)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 혁신적·새로운 방식, 기법, 전략을 실행하는 방안;
- (2)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사기,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제재 회피, 내부자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식별·보고하기 위한 기준;
- (3) 블록체인, 믹싱 서비스, 텀블러 등 결제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당사자 식별성을 낮추는 서비스의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발행자 시스템 및 관행의 기준;
- (4)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과 상호작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맞춤형 위험 관리 기준.

(e) 의회 보고 및 권고(Recommendations and Report to Congress)

- (1) 일반 규정 - 본 법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은 상·하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및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에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A) 디지털 자산 관련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 탐지를 위한 혁신적 방식 개발·이행을 허용하는 입법·규제 제안;
  - (B) 본 조에 따른 연구·위험 평가 결과;
  - (C) 금융기관의 혁신적 탐지 방식 이행 지원 노력;
  - (D) 분산원장, 믹싱 서비스, 텀블러 등에서의 거래가 불법 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정도;
  - (E)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용어의 범위 및 이를 DeFi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입법 권고.

(2) 기밀 부록 - 필요한 경우, 기밀 부록(classified annex)을 첨부할 수 있다.

(f) 해석 규정(Rule of Construction) - 본 조는 재무부 장관 또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본 조의 보고 제출 전에도, 기존 면제권, no-action letter, 규정제정 권한

등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혁신적 담지 방식 채택을 촉진할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10 조. 결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및 담보의 보관(Custody of Payment Stablecoin Reserve and Collateral)**

(a) 일반 규정 - 결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payment stablecoin reserve), 담보로 사용되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용 개인 키(private keys)에 대해 보관·수탁 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자는

(1) 아래 기관의 감독 또는 규제를 받을 것:

(A)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12 U.S.C. 5301) 제 12 조 (B)항 또는 (C)항에 기술된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관 또는 주요 금융 규제 기관

(B) 「연방예금보험법」 제 3 조 또는 「2020 자금세탁방지법」 제 6003 조에 정의된 주 은행감독기관 또는 주 신용조합감독기관, 단 해당 기관은 이사회(연준)에 (d)항의 정보 범주 관련 필요·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2) (b)항의 요건을 준수할 것(단, 연방 규제기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유사 요건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

(b) 고객 자산 요건(Customer Property Requirement) - (a)항의 대상자는, 해당하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개인 키, 현금 및 기타 자산을:

(1) 해당 자산을 위해 본인을 통해 보관·취득·보유하는 고객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본인 소유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2) 적절한 보호조치 - 해당자는 고객의 결제 스테이블코인, 개인 키, 현금 및 기타 자산을 해당자의 채권자 청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혼합 보관 금지 (Commingling Prohibited)

(1) 일반 규정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또는 고객의 결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결제 스테이블코인, 현금 및 기타 자산은 (a)항에 명시된 자가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해당자의 자산과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2) 예외 - 다음의 경우, (1)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혼합이 허용된다:

- (A) 편의를 위해, 다수의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또는 고객의 준비금, 결제 스테이블코인, 현금 및 기타 자산을 주 면허 예금기관(State-chartered depository institution), 보험 예금기관(insure depository institution), 국가 은행(national bank), 신탁회사(trust company)에 설치된 통합 계좌(omnibus account)에 예치할 수 있으며, 예금기관의 현금 형태로 보관된 준비금은 해당 예금기관 자산과 분리할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 (B) 거래나 자산 이전의 이체, 조정, 결제를 위해 필요한 준비금, 결제 스테이블코인, 현금, 기타 자산은 인출하여 위 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수수료, 세금, 보관료 등 법적으로 발생한 비용 지급이 포함된다.
- (C)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주요 규제기관이 규칙, 규정, 명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a)항에 명시된 자가 관리하는 발행자·고객 계좌 내의 준비금, 결제 스테이블코인, 현금, 기타 자산은 해당 기관이 별도 회계 처리·관리·취급 대상으로 정한 다른 준비금, 결제 스테이블코인, 현금, 기타 자산과 혼합 예치할 수 있다.
- (D) 결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대한 수탁 또는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예금기관은, 연방법에 부합하는 경우, 준비금을 예금 형태의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 (3) 고객 우선권 (Customer Priority) - (a)항의 해당자가 고객을 위해 보관하는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1)항의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스테이블코인 관련 고객의 청구권은, 해당자의 다른 채권자(다른 고객 제외)의 청구권보다 우선한다. 단, 고객이 다른 채권의 우선권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d) 규제 정보 (Regulatory Information) - (a)항의 해당자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사업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해당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주요 규제기관이 정한 형식·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 (e) 제외 (Exclusion) -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결제 스테이블코인이나 개인 키를 관리·보관하도록 지원하는 자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본 조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 제 11 조.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지급불능 절차에서의 취급

- (a) 일반 규정 - 연방법 또는 주법상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지급불능 절차(「미국 파산법」(11 U.S.C.)에 따른 절차 및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관리하는 지급불능 절차 포함)에서, 본 조 및 (d)항에서 추가된 11 U.S.C. §507(e)를 적용받아:
- (1) 해당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자의 청구권은, 동일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다른 자들의 청구권과 비례하여, 발행자 및 그 외 채권자들의 청구권보다 결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대해 우선한다
  - (2) U.S.C. 제 11 편 제 101 조 (5)항에서 정의한 “클레임(claim)”의 정의와 관계없이, 해당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자는 클레임을 보유한 자로 간주된다.
  - (3) (1)항에 따른 우선권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보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클레임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b) 정의(Definitions) - U.S.C. 제 11 편 제 101 조 40(B)항 다음에 다음 조항을 추가한다:  
 “(40C) ‘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및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라는 용어는 GENIUS Act 제 2 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 (c) 자동 중지(AUTOMATIC STAY) - U.S.C. 제 11 편 제 362 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1) (a)항에서
    - (A) (7)호 끝의 “and” 삭제
    - (B) (8)호 끝의 마침표를 세미콜론으로 교체
    - (C) 제(9)호 추가 ; “(9) GENIUS Act 제 4 조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서의 결제 스테이블코인 상황.”
  - (2) (d)항에서
    - (A) (3)(B)(ii) 끝의 “or” 삭제
    - (B) (4)(B) 끝의 마침표를 세미콜론으로 교체.

(C) (5)호 추가: “(5)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청구 및 진술에 따라, 신청일 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원이 확인한 경우, 동일 조건의 결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비례적으로 분배할 준비금이 확보되어 있으면, 법원은 심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명령을 내려 분배가 시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d) 파산 절차에서의 우선순위(Priority in Bankruptcy Proceedings) - U.S.C. 제 11 편 제 507 조에 다음을 추가한다:

(1) (a)항 서두의 “The following”을 “Subject to subsection (e), the following”로 수정.

(2) (e)항 추가: “(e) (a)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유지해야 할 준비금에서 모든 청구권이 상환되지 못할 경우, 남은 청구권은 해당 발행자 재산의 청구권이 되며, 다른 모든 채권보다(해당 항에 따른 우선채권 포함) 최우선 순위를 가진다. 이는 GENIUS Act 제 4 조에 따라 추가 준비금을 유지했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e) 결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Payment Stablecoin Reserves) - U.S.C. 제 11 편 제 541 조(b)항에 다음을 추가한다:

(1) (9)항 B 소항 끝의 “or” 삭제

(2) (10)(C)항 끝의 마침표를 세미콜론으로 교체

(3) (11)항 추가: “(11) GENIUS Act 제 4 조에 따른 필수 결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단, 해당 준비금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본 제목의 §362 는 여전히 적용됨)

(f) 개입권(Intervention) - U.S.C. 제 11 편 제 101 조에 다음을 추가한다: “(c) 통화감독청장(Comptroller of the Currency) 또는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State payment stablecoin regulator)은, 본 장의 사건에서 채무자가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인 경우, 고객 보호 등 어떤 사안이든 제기·출석·의견진술할 권한을 가진다.”

(g) 기존 지급불능법의 적용 -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지급불능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1) 「연방예금보험법」(12 U.S.C. 1813) 제 3 조에 정의된 예금기관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국가신용조합관리청(NCUA), 또는 해당 주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에 의해 정리된다
- (2) 「연방예금보험법」(12 U.S.C. 1813) 제 3 조에 정의된 예금기관의 자회사 또는 비은행 기관은 미국법전 제 11 편에 따라 채무자로 간주될 수 있다.

(h)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주요 규제기관의 연구

- (1) 연구 의무 -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들은 발행자의 잠재적 지급불능 절차를 연구하며, 다음을 포함해 검토한다:
  - (A) 허가된 발행자에 대한 기존 파산법 및 규정의 공백,
  - (B) 발행자 지급불능 시 보유자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C) 질서 있는 지급불능 관리체계의 유용성 및 추가 권한 필요성.
- (2) 보고서 - 본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및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연구 결과 및 입법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12 조. 상호운용성 기준 (Interoperability Standards)**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들은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기타 관련 표준기관, 주 은행·신용조합 규제기관과 협의해: U.S.C. 제 5편 제 553 조 및 「국가기술이전·진흥법」(Public Law 104-113)을 준수하여,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상호 호환성(promote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평가·필요 시 제정할 수 있다. 이 기준은:

- (1) 다른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간,
- (2) 허용된 통신 프로토콜·블록체인(허가형·공개형 포함) 등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과의 상호운용성을 대상으로 한다

**제 13 조. 규칙제정 (Rulemaking)**

- (a) 일반 규정 - 본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각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 재무부 장관, 주 규제기관은 적법한 고지·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b) 조율 - 연방·주 규제기관 및 재무부 장관은 본 법 시행을 위한 규정 제정 시 필요에 따라 상호 조율해야 한다.

(c) 보고 의무 - 시행일로부터 180 일 이내, 각 연방 은행감독기관은 상·하원 해당 상임위원회에 규정 제정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제 14 조. 비결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연구 (Study on Non-Payment Stablecoins)

(a) 재무부의 연구

(1) 연구 - 재무부 장관은 연준 이사회,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비결제 스테이블코인(non-payment stablecoins, 내생적 담보 포함)을 연구한다.

(2) 보고 - 시행일로부터 365 일 이내, 상·하원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음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A) 비결제 스테이블코인 유형 및 기술 설계상 이점·위험,

(B) 비결제 스테이블코인 체계의 참가자.

(C) 비결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및 잠재적 활용

(D) 준비금 구성의 성격,

(E) 사용되는 알고리즘 유형

(F) 거버넌스 구조(탈중앙화 여부 포함),

(G) 대중 홍보·광고 성격,

(H) 소비자 공지·공개서의 명확성.

(3) 기밀 부록 - 필요한 경우, 기밀 부록(classified annex)을 첨부할 수 있다.

(b) 내생적 담보화 결제 스테이블코인 정의. 이 조항에서 "내생적 담보화 결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 (1) 작성자가 대표한 채권은 고정된 금액의 금전적 가치로 전환, 상환 또는 재매수될 것이다.
- (2) 동일한 창작자가 생성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다른 디지털 자산의 가치에만 의존하여 고정 가격을 유지한다.

### 제 15 조. 보고서 (Reports)

(a) 연례 보고 의무 - 본 법 시행 1년 후부터 매년,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들은 필요 시 주 규제기관들과 협의하여,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연구국 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는 필요 시 기밀 부록(classified annex)을 포함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 (1) 결제 스테이블코인 활동의 동향 요약,
- (2)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승인 신청(제 5 조) 건수 요약, 승인·거부 건 포함,
- (3) 결제 스테이블코인 활동이 금융 시스템 안전성과 건전성에 미치는 잠재적 금융안정성 리스크 설명.

(b) FSOC 보고 -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a)항의 보고서 내용을 「2010년 금융안정법」 제 112(a)(2)(N)항의 연례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 제 16 조. 은행기관의 권한 (Authority of Banking Institutions)

(a) 해석 규정 - 본 법은 예금기관, 연방 신용조합, 주 신용조합, 국립은행, 신탁회사가 관련 주·연방법에 따라 허용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 (1) 예금(또는 신용조합의 경우 지분) 수취, 해당 예금을 나타내는 디지털 자산 발행,
- (2) 분산원장(DLT)을 장부 및 기록 관리 또는 은행 내 이체 처리에 활용,
- (3) 결제 스테이블코인, 해당 프라이빗 키, 준비금에 대한 수탁 서비스 제공.

(b) 규제 검토 - 연방 규제기관에 의해 감독되는 기관들은 본 법에서 언급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활동 및 투자(예: 발행자·중개자로서 활동, 고객 거래 지원 수수료 지급 포함)를 수행할 수 있다. 주요 연방 규제기관들은 기존 지침·규정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 그러한 활동 및 투자가 허용됨을 명확히 해야 한다.

(c) 수탁 활동의 회계처리 - 적절한 연방 은행감독기관, 국가신용조합관리청(신용조합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할 수 없다:

- (1)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소유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결제 스테이블코인 수탁·보관 자산)을 기관 재무제표의 부채로 포함,
- (2) 제 4 조(a)(1)(A)에 기술된 디지털 자산 및 이러한 자산을 뒷받침하는 준비금에 대한 규제 자본을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단, 다음 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관 또는 안전 보관 서비스에 내재된 운영상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제외.

- (A) 해당 연방 은행 기관
- (B) 신용조합의 경우 국가신용조합관리국
- (C) 주(State) 은행 감독관 또는
- (D) 주 신용 조합 감독자.

(d) 주(State) 인가 예금기관

(1) 일반 규정 - 주 은행법에 따라 인가된 예금기관이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해당 자회사를 통해 전국에서 송금업·수탁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단, 해당 예금기관이:

- (A) 본점 주 법률·규정에 따라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주 은행감독기관이 재무 상태·위험 프로필(무보험 예금 포함)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평가할 것,
- (B) 본점 주 법률·규정에 따라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고, 주 은행감독기관이 재무 상태·위험 프로필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평가할 것.

(2) 해석 규칙 (Rule of Construction) - 이 조항은 다음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호스트 주(host State)의 은행 규제당국(host State bank regulator)이 예금취급기관의 자회사로서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나 해당 발행자를 통해 수행되는 활동을 검사하여, 호스트 주 소비자 보호법의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이러한

소비자 보호법은 호스트 주 규제당국이 특정 관할권을 갖는 경우에 한해 해당 기관에 적용되며, 제 7(f)항에 따라 적용된다.

(e) 정의 (Definitions)

- (1) 홈 주 (Home State) - “홈 주”란, 예금취급기관이 인가(charter)를 받은 주를 의미한다.
- (2) 호스트 주 (Host State) - “호스트 주”란, 예금취급기관이 지점을 설립하거나, 고객을 유치하거나, 기타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주로, 홈 주 이외의 주를 의미한다.

**제 17 조.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증권·상품 비해당 명확화 및 발행자의 투자회사 비해당 명확화**

- (a) 1940 년 투자자문법 - 「1940 년 투자자문법」 제 202(a)(18)항(15 U.S.C. 80b-2(a)(18)) 끝에 다음 문구 추가: “여기서 ‘증권(security)’은 GENIUS 법 제 2 조에서 정의한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 (b) 1940 년 투자회사법 - 「1940 년 투자회사법」(15 U.S.C. 80a-1 등) 개정:
  - (1) 제 2(a)(36)항 끝에 추가: “여기서 ‘증권’은 GENIUS 법 제 2 조에서 정의한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 (2) 제 3(c)(3)항 중 “therefor;” 뒤에 추가: “GENIUS 법 제 2 조에서 정의한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c) 1933 년 증권법 - 「1933 년 증권법」 제 2(a)(1)항(15 U.S.C. 77b(a)(1)) 끝에 추가: “여기서 ‘증권’은 GENIUS 법 제 2 조에서 정의한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 (d) 1934 년 증권거래법 - 「1934 년 증권거래법」 제 3(a)(10)항(15 U.S.C. 78c(a)(10)) 끝에 추가: “여기서 ‘증권’은 GENIUS 법 제 2 조에서 정의한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 (e) 1970 년 증권투자자 보호법 - 「1970 년 증권투자자 보호법」 제 16(14)항(15 U.S.C. 78III(14)) 끝에 추가: “여기서 ‘증권’은 GENIUS 법 제 2 조에서 정의한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 (f) 상품거래법 - 「상품거래법」 제 1a(9)항(7 U.S.C. 1a(9)) 끝에 추가: “여기서 ‘상품(commodity)’은 GENIUS 법 제 2 조에서 정의한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 제 18 조.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예외 및 해외 발행자 상호인정

- (a) 일반 규정 - 제 3 조의 금지 조항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1) 발행자가 소재 국가 또는 미국령(푸에르토리코, 괌, 아메리칸 사모아, 버진아일랜드)의 외국 규제기관의 규제를 받고, 해당 국가의 규제·감독 체계가 본 법의 규제 체계(특히 제 4(a)항 요건)와 동등함을 재무부 장관이 (b)항에 따라 인정한 경우.
- (2) 발행자가 (c)항에 따라 통화감독청(Comptroller)에 등록한 경우.
- (3) 발행자가 미국 내 금융기관에 충분한 유동성 대응 준비금을 보유하거나, (d)항에 따른 상호 협약에서 허용된 경우.
- (4) 발행자 소재 국가가 미국의 포괄적 경제 제재 대상국이 아니며, 자금세탁 우려 주요 관할지로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경우.

- (b) 재무부 결정.

- (1) 일반 규정 - 재무부 장관은 외국 국가의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 체계가 본 법 및 제 4(a)항 요건과 동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판단은 반드시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 전원의 권고를 받아야 하며, 효력이 발생하기 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결정 사유 및 해당 국가의 규제·감독 체계가 어떻게 본 법 요건과 동등한지 설명을 공표해야 한다
- (2) 요청 -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나 해당국 규제기관은 재무부 장관에게 (1)항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3) 결정 시한 -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또는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당국이 (2)항에 따라 결정을 요청할 경우, 재무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결정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10 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내려야 한다.

- (4) 결정 철회

- (A) 일반 규정 - 재무부 장관은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당국과 협의하여, 해당 외국 국가의 규제 체계가 본 법에서 정한 요건과 더 이상 동등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1)항에 따른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가 발효되기 전에, 재무부 장관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철회의 정당성을 공표해야 한다.
- (B) 제한된 보호조항 - 재무부 장관이 (A)항에 따라 결정을 철회할 경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철회 대상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판매·제공 행위가 제 3 조 위반으로 간주되기까지 90 일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 (5) 공고 - 재무부 장관은 (1)항에 따라 결정된 외국 국가들의 최신 목록을 보관하고 공개해야 한다.
- (6) 규칙 제정 - 재무부 장관은 본 조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본 법 발효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정해야 한다.
- (c) 등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 (1) 등록.
- (A) 일반 규정 -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판매 또는 제공하려면 통화감독청(Comptroller)에 등록해야 한다.
- (B) 등록 승인 - 등록서는 통화감독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거부 통보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 (C) 거부 기준 - 통화감독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등록 거부 여부를 판단한다.
- (i) 재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
  - (ii) 외국 발행자의 미국 내 금융·경영 자원
  - (iii) 본 법 준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여부
  - (iv) 미국 금융안정에 대한 위험
  - (v) 미국 내 불법 금융 위험

(D) 항소 절차 - 거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항소 요청 가능.

(E) 규칙 제정 - 통화감독청은 등록 승인 기준 및 항소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F) 공고 - 통화감독청은 승인된 외국 발행자 등록 목록을 관리·공개한다.

(2) 지속적인 모니터링.-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A) 통화감독청이 정하는 보고, 감독, 검사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 본 법 집행 관련 미국 관할권에 동의해야 한다.

(3) 미준수

(A) 통화감독청 조치 - 통화감독청은 재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불충분한 준비금, 불법 금융 위험, 금융안정 위험 등을 이유로 등록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전 연방 관보에 정당성 공표 필요.

(B) 재무부 장관 조치 - 재무부 장관은 경제제재 회피, 자금세탁, 기타 불법 금융 위험 등을 이유로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d) 상호주의

(1) 일반 규정 - 재무부 장관은 미국과 유사한 규제 체계를 가진 해외 관할과 상호주의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고려 사항은:

(A) 제 4(a)항과 유사한 요건

(B)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방지, 제재 준수 요건

(C) 국제 거래·상호운용성을 위한 감독·집행 역량

(2) 공표: 협정 발효 90 일 전까지 연방 관보에 내용 공표.

(3) 완료: 발효일로부터 2 년 이내 협정 체결 권고.

## 제 19 조. 결제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개

미국 법전 제 5 편 13104(a)(3)항에서 “또는 예금”을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5,000 이하의 스테이블코인 또는 예금”으로 수정.

## 제 20 조. 발효일

본 법 및 그에 따른 개정 사항은 다음 중 빠른 날짜에 발효:

- (1) 이 법 제정일로부터 18 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 (2)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관이 이 법을 이행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는 날짜로부터 120 일 후의 날짜.

2025 년 6 월 17 일 상원 통과.

확인:

서기